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선 결	수 석	사무 장
결 재	조 직	조 시
집 금	총 무	조 시
일 지	2017. 2. 17.	노 안
금 번	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동)	노 안
번호	92	법 규
수 리	부	후

수신자 강한규 귀하(우 46204 부산광역시
(경유) 합버스터미널) 2층)
제목 사건접수 알림 및 보정요구 등

1. 귀하가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부산2017부노9) 사건이 2017.02.13.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귀하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취지가 불명확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가. 보정사항 : 신청취지

나. 보정기일 : 2017. 2. 20.

다. 신청취지 작성 예시

- 이 사건 사용자가 0000. 00. 00.자에 000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다.

-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위원 000, 000, 000 등 3명에 대하여 0000.00.00. 자에 징계해고한 것은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이다.

※ 인원 수 및 징계해고일자가 다를 경우 별지 작성

라. 보정신청서 제출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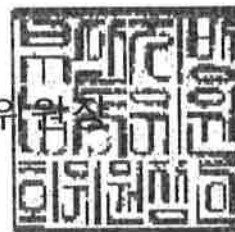
변경전	변경후

3.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사건진행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을 가급적 1회로 마무리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판사건 진행 안내문 1부. 끝.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김달호

과장

전결 2017. 2. 14.

김성일

협조자

시행 심판과-986

(2017. 2. 14.)

접수

우 4633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금사동,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http://busan.nlr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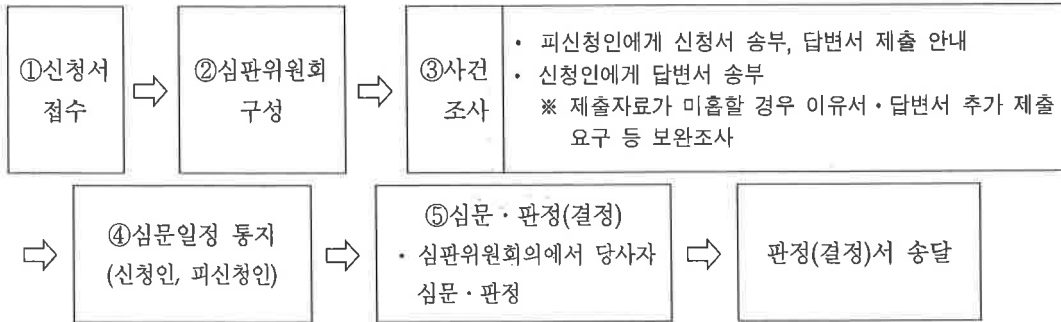
전화번호 051-559-3771 팩스번호 051-529-7870 / daroa0106@korea.kr / 비공개(6)

국민행복, 정부3.0이 함께 합니다

심판사건 진행 안내문

우리 위원회의 심판사건 절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사건처리의 흐름



2. 이유서·답변서 및 증거 자료 제출

- ◆ 신청인은 “이유서”로 피신청인은 “답변서”로 제출하시고, 증거자료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측은 “노 제0호증”으로, 사용자 측은 “사 제0호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작성된 일련의 관련 자료는 노(사) 제0호증의 1, 2, 3...으로 기재

- ◆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이유서·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주장과 증거를 되도록 한 번에 정리하시고, 아울러 상대방 수만큼 부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 ◆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원활하고 통일적인 심판사건의 진행을 위하여 선정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식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 전자민원창구(각종서식) 참고

- ◆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무료로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을 선임하여 드립니다.(붙임 2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 다만, 초심구제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이미 2개 사건까지 지원한 경우는 제한됩니다.(‘15. 7. 1.부터 적용)

※ 대리인의 역할 : 이유서(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답변 등 근로자를 위한 법률적 지원

4. 단독심판 및 화해제도

- ◆ 심판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이 단독심판회의의 진행을 원하거나, 화해의 의사가 있으면 담당 조사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화해성립으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법원의 재판없이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5. 증인의 신청(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

- ◆ 당사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위원회에 심문회의에서 자기의 주장을 증명할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증인신청을 허가하면 심문회의 당일 증인과 함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6. 공익위원 제척·기피신청(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2항, 제3항)

- ◆ 사건 당사자는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사건은 3일)에 당해 사건의 “공익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척신청을,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건의 공익위원 명단과 위원 제척·기피 신청서는 심문일정 통지시 송부하여 드립

7. 금전보상명령 신청(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 ◆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그 밖의 유의사항

- ◆ 심판사건 진행 중 사업체 명칭,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주소불명으로 출석통지서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

붙임 1. 이유서(답변서) 표지 서식

2.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안내 및 대리인 선임 신청서

3. 단독심판 신청(동의)서

4. 화해제도 운영 안내 및 화해신청서

5. 증인신청서

6.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붙임 1)이유서(답변서) 표지 서식

이 유 서

사 건	서울2015부해000 (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 로 자	김○○ (000000-2*****)
(신청인)	주소
	위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정○○ (전화 : 00-000-0000)
사 용 자	(주)○○○
(피신청인)	소재지
	대표이사 이○○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 김○○(또는 이 사건 근로자 김○○의 대리인)는 다음과 같이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201 . 00. 00.

위 근로자(신청인)(의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정○○)(인)

답 변 서

사 건	서울2015부해000 (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 로 자	김○○ (000000-2*****)
(신청인)	주소
사 용 자	(주)○○○
(피신청인)	소재지
	대표이사 이○○
	위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박○○ (전화 : 00-000-0000)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주)○○○ (또는 이 사건 사용자 (주)○○○의 대리인)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1 . 00. 00.

위 사용자(피신청인)(의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박○○)(인)

(붙임 2) 권리구제업무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 안내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무료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무료지원제도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차별시정 신청(통보사건 포함)
등을 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원할 경우
무료로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등·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또는 차별시정 신청(통보사건
포함) 등을 한 사람

※ 다만, 초심구제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이미 2개 사건
까지 지원한 경우는 제한됨('15.7.1.부터 적용)

☞ 신청 절차

대리인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 ⇒ 노동위원회는 담당 대리인 선임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의 전자
민원창구(각종서식) 또는 각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비치된 서식 사용

☞ 선임된 대리인의 역할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대리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대리인 선임비용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없음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사	건	명											
(사건번호)													
신	성	명	생년월일(남/여) . . . ()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_____ 원 (₩_____) ※ 산출근거(해고 등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80%;">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기 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임 금 액</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r> </tbody> </table>				기 간	임 금 액	~		~		~		~	
기 간	임 금 액												
~													
~													
~													
~													
본인이 귀 위원회에 접수한 구제신청사건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항에 따라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동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붙임 3) 단독심판 신청(동의)서

■ 노동위원회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단독심판 신청(동의)서

사 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근로자	성명: 주소: 대리인: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주소: 대리인:
사용자	명칭: (대표자:) 주소: 대리인:	
신청유형 (해당란에 √ 표시)	[] 심문회의 진행을 통하여 판정을 원하는 경우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참여와 심문 없이 화해만을 위한 회의진행을 원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 「노동위원회규칙」 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독심판을 신청(동의)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노동조합)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 (서명 또는 날인)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유의사항	이 신청(동의)서는 당사자 쌍방이 신청(동의)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화해제도 안내

“분쟁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화해입니다.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화해의 의미

- 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분쟁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법이나 이를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고 소송 등을 통하여 계속 다투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 화해의 효력

- 노동위원회의 화해가 이루어질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이 있어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화해를 통해서도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화해신청 방법

- 화해신청은 당사자간에 화해를 통하여 분쟁해결을 원할 경우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화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건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해신청서(붙임 양식)를 제출하시면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다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 해 신 청 서

사 건		
신 청 인	성 명	
	주 소	(☎)
	당사자 지 위	[] 근로자(노동조합) [] 사용자 (해당란에 √ 표시)
화 해 취 지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5) 증인신청서

■ 노동위원회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증 인 신 청 서

사 건						
신 청 인	성 명					
	주 소	(☎ :)				
	당사자 지위	[]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 사용자 (해당란에 √ 표시)				
증인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 :)				
신 청 사 유						
증인심문 사항						

「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6)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 노동위원회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금 전 보 상 명 령 신 청 서

사		건			
신청인	성	명			
	주	소	(☎ :)		
보상금 요 구 금 액	합	계	금	원 (₩)	
	임금상당액		금 액		
			산출근거		
	비 용		금 액		
			산출근거		
	기 타 ()		금 액		
			산출근거		

위 사건에 관하여 귀 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복직명령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금전보상을 명령하여 주시기를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그 밖에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소명자료
------	--------------------------------------

210mm×297mm(백상지 80g/㎡)